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광주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고정824 판결 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정824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정옥(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3:46경 아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XD차량 앞바퀴 타이어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찔러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16. 02:47경부터 같은 날 07:18경까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사랑혀 주껴, 좆은 니가 알잖아", "보지가 너하곤 분명 맞아"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 D(여, 5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 체 이용 음란행위의점)

-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 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사 최현정